

LIG넥스원 협력회사 행동규범

제 정 2021년 07월 01일

전 문

LIG넥스원 협력회사 행동규범(이하"규범"이라함)은 LIG넥스원의 협력회사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LIG넥스원이 협력회사에 요구하는 바를 제시한다. LIG넥스원은 본 규범을 필요에 따라 변경 할 수 있고, 변경사항은 사전에 협력회사 구매포탈시스템 등을 통해 협력회사에 공지한다.

제1장 근로자의 인권 존중(Labor)

1. 자발적 근로(강제근로 금지)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강요 해서는 안된다. 채용시 근로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고, 근로자는 희망 시 자유롭게 퇴사 할 수 있어야 한다.

2. 아동고용 금지 및 유소년 근로자 관리

협력회사는 아동을 고용 해서는 안된다. 아동은 만15세 미만 또는 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 연령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만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는 안전보건 상 위험한 공정 또는 연장/야간 근로에 투입하면 안된다.

3. 과도한 연장근로 금지

주당 총 근로시간은 현지 법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매 7일 마다 최소한 1일의 휴무를 허용해야 한다.

4. 임금과 복리후생

임금은 일한 시간 만큼 법정 최저임금 기준이상으로 지급 되어야하고, 초과/야간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현지 법규에 따라 가산 수당을 각각 지급해야한다. 징계 조치로 임금에 대한 삭감은 허용하지 않는다.(단, 지각 등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공제는 인정)

5. 인도적 대우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 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회사는 합리적인 징계 규정과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차별 금지

협력회사는 채용, 급여 및 인센티브지급, 승진, 연수 등 교육훈련 기회제공 등 고용 관행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지향, 성 정체성, 출신 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가입, 국적, 결혼여부에 근거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7. 결사의 자유보장

협력회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러한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한다

제2장 안전한 작업환경(Health & Safety)

1. 산업안전

협력회사는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을 파악하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한 공정의 설계, 기술적/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작업 절차서 내 안전 측면 반영,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 비상사태 대비

협력회사는 발생가능성이 높고 우선 대응이 필요한 비상사태를 정의하고, 사태별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산업재해와 질병 예방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질병을 예방/관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4. 작업환경내 유해인자 노출 관리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 유해 인자를 파악하고, 작업환경 측정(소음, 진동, 실내 공기질 등)을 통하여 그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잠재적 위험요인들은 적절한 관리감독 및 기술적/행정적 조치 등을 통하여 노출을 기준치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5. 육체적 과중업무 관리

협력회사는 단순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파악하여, 이를 제거 또는 최소화 시키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6. 설비안전

협력회사는 작업장 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법규에 따라 실시해야 하고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7. 기숙사 및 위생시설 제공

협력회사는 작업장, 위생 관련 장소, 주거 시설 등 근로자의 소재와 관련된 모든 장소와 시설을 보건안전 리스크 및 오염 리스크가 없도록 제공해야 한다.

8. 안전 보건교육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거나,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비치해야 한다.

제3장 환경친화적 사업장 관리(Environment)

1. 환경법규 준수(인허가와 보고)

협력회사는 법정 필수 환경 인허가 및 보고 요건 등의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오염예방과 자원/에너지 사용절감

협력회사는 공정개선, 원료대체, 예방보전, 자원보존,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에너지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로화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화학물질 관리

협력회사는 유출 시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 (지정 폐기물 포함)을 파악하여 화학물질 관련 법령에 기반한 법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폐기물 관리

협력회사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특성, 발생량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하고,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대기오염 관리

협력회사는 공정상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물질, 연소 부산물의 종류, 특성, 발생량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한다.

6. 제품 및 공정내 유해물질 규제준수

협력회사는 특정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장 기업윤리 준수(Ethics)

1. 윤리경영 준수와 부당이익 금지

협력회사는 LIG넥스원 윤리경영 방침에 따라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 횡령 등 부패행위를 정책으로 금지하고, 반부패 관련 법규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확인해야 한다.

2. 정보 공개

모든 비즈니스 거래는 투명해야 하고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관련법규, 업계 모범기준에 따라 노무/안전보건/환경관리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해당 법규와 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3. 지적재산권 보호

협력회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LIG넥스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4. 공정거래, 광고와 경쟁

협력회사는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에 관한 규제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5. 신원보호와 보복금지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비밀 및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 채널을 운영해야 한다.

6. 개인정보 보호

협력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협력회사, 고객사, 소비자, 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공유 시 개인 정보보호/정보 보안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1. 이 지침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